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9. 6. 25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6월 5일

나. 발 의 자 : 유승용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6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
제5차 사회건설위원회(2019. 6. 19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유승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과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 삭제 (안 제5조, 제8조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 폐지 (안 부칙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정옥)

- 본 건은 상위법령인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과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은
 - 안 제5조, 제8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중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
 - 안 부칙 제2조에서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 폐지를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과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개정으로 복지위원 관련 조문이 삭제되어 복지위원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,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승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6월 일

발 의 자 : 유승용 의원 외 4명

1. 제안이유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5조, 제8조)
- 나.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다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 폐지
(안 부칙 제2조)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근거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,
「사회복지사업법」
- 나. 예산조치 : 예산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19. 5.31. ~ 6. 5.)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”를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,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로 한다.

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란 동 단위의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발굴, 자원연계·협력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4조제6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8조제4항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”을 “동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제3조(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,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<u>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,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</u>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“ <u>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</u> ”란 <u>동 단위의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발굴, 자원연계·협력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.</u>
제4조(대표협의체의 기능) ① (생략)	제4조(대표협의체의 기능) (현행 제1항과 같음)
제5조(대표협의체의 구성) ① (생략)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구청장·복지국장·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, 동 협의체 위	제5조(대표협의체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1. ~ 3. (생략) 4. <u>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</u> 5. (생략) ③·④ (생략) <u><신설></u> 제8조(동 협의체) ① ~ ③ (생략) ④ 동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~ 4. (생략) 5. <u>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</u> 6.·7. (생략) ⑤ ~ ⑦ (생략) ⑧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<u>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</u> 정한다.	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5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제4조제6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 제8조(동 협의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6.·7. (현행과 같음) ⑤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----- ----- 동 ----- ----- -----.
---	--